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안동소방서 자체감사 —

2023. 9.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감 액		추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6건	1	5	1	2,560	0	0	0	0
1	안 동 소 방 서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1						
2	안 동 소 방 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부적정	1		1	2,560				
3	안 동 소 방 서	외부강의등 사전 미신고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1						
4	안 동 소 방 서	실무(특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1						
5	안 동 소 방 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1						
6	안 동 소 방 서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
2.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부적정 (시정)	4
3. 외부강의등 사전 미신고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6
4. 실무(특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주의)	9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11
6.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주의)	16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소방서
관 계 부 서	AAA
내 용	

안동소방서 AAA에서는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그 결과에 따른 승진·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을 계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지1호 서식’의 평정방법에 따르면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할 때에는 평정대상자의 무단지각,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기간무단이석, 징계·직위해제, 경고·주의, 대민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평정점수 기재방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각 평가요소별 평정점수란에 각 목의 점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기재한 후 평정점수 합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 정기평정 계획 알림1)’을 각 소방서에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평정단위 기간 중 징계처분자(경고, 주의 포함)를 상위 평정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근무성적 평정 시 직무수행태도에 징계, 경고·주의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1) AAA-00000(20-- . --. --.) ~ AAA-00000(20-- . -. -.)

따라서 안동소방서 AAA에서는 1차 및 2차 평정자가 상기 규정 및 소방본부의 공문에 의거하여 징계, 경고·주의 처분 등을 받은 평정대상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 항목에 징계, 경고·주의 등의 내역이 점수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작성은 평정방법에 따라 각 평가요소별 점수 구분에 점수를 기재 후 합계하여 평정하는 등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 또는 ‘▼▼’ 처분을 받은 §§§ ♣♣♣ 등 7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1차 평정자인 부서장이 직무수행태도에 만점(10점)을 부여하였고, 특히 20--. --. --. ‘▼▼’ 처분을 받은 ※※※ ▷▷▷의 경우에는 2차 평정자인 안동소방서장 조차도 직무수행태도에 만점(10점)을 부여하여 평정대상자들의 ‘▼’ 또는 ‘▼▼’ 처분 내역을 직무수행태도 평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1] 직무수행태도 근무성적평적 부적정 내역

- 내용 생략 -

그리고 아래 [표2]와 같이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면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각 평가요소별 평정점수란에 각 목의 점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기재한 후 평정점수 합계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각 목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은 채 평정점수 합계란에 점수를 기재한 사실이 있다.

[표2] 평정요소별 평정 부적정 내역

- 내용 생략 -

그 결과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소방서장은

- ① 앞으로는 근무성적 평정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소방서
관 계 부 서	BBB
내 용	

안동소방서 BBB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을 실시·관리하고 있다.

1. 해임대상 의용소방대원 미해임에 따른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에 따르면 전담의용소방대원의 경우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연 12시간 이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교육 및 훈련 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임하여야 하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선발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의용소방대원 ●●● 외 2명이 2020년 기준 교육훈련 시간 연 12시간 이상 기준에 미달하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해임하지 아니하고 해임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2021년, 2023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2,808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1] 장학금 지급자 중 해임대상자 교육·훈련 이수 현황

(단위 : 천원)

- 내용 생략 -

2. 장학금 지급 한도액 조례 개정 미적용에 따른 과지급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대학생인 의용소방대 자녀의 장학금 연간 지급 가능액은 1,872천 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20. 4월 개정²⁾되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20. 4월 이후 장학금 지급 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장학금 연간 지급 가능액인 1,872천 원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대학생인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가능액이 연 1,872천 원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전 기준인 2,000천 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YYY의 자녀 ZZZ 외 19명에게 장학금 2,560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2] 장학금 과다지급자 현황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안동소방서장은

- ① ##의용소방대원 YYY의 자녀 ZZZ 외 19명에게 과다 지급된 2020년 장학금 2,560천 원은 회수하시고,(시정)
- ②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개정 전 : 2,000천원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외부강의등 사전 미신고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소방서
관 계 부 서	CCC
내 용	

안동소방서 CCC에서는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및 출장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2항 및 외부강의등의 신고 매뉴얼³⁾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소방서에서는 소속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사례금을 받는

3) 외부강의등 신고 절차 및 방법 안내[소방본부 소행행정과-11234(2022.5.19.)]

외부강의 횟수가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19. 7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안동소방서 CCC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CCC ◇◇◇의 경우 2022년 5월과 6월에 각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실시하여 초과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도 거치지 않고 사전 승인도 없이 부적정하게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 ○○○ 역시 2021년 5월과 6월에 각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실시하였음에도 초과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도 거치지 않고 사전 승인도 없이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부적정하게 실시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외부강의등 신고 부적정 내역

(단위 :원)

연번	소속	성명	직위 직급	내 용					비 고							
				연/월	요청기관	강의일 (회,시간)	강의 장소	강의주제		대가 금액						
1	CCC	◇◇◇	§~	2022/-		-.- (1~3회) (12시간)		생략		신고						
						-.-- (4회) (4시간)						생략	신고 부적정 (월3회 초과)			
				2022/-		-.-~ (1~3회) (6시간)		생략		신고						
						-.-- (4~5회) (4시간)						생략	신고 부적정 (월3회 초과)			
2	CCC	○○○	§~	2021/-		-.- (1회) (2시간)		생략		신고						
						-.-- (2회) (1시간)						생략	신고			
						-.-- (3회) (2시간)									생략	신고
						-.-- (4회) (2시간)										

					(4회) (2시간)				(월3회 초과)
					-.-- (5회) (2시간)		생략		신고 부적정 (월3회 초과)
			2021/-		-.-- (1회) (2시간)		생략		신고
				-.-- (2~3회) (2시간)		생략		신고	
				-.-- (4회) (2시간)		생략		신고 부적정 (월3회 초과)	

그 결과 소속 직원이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 및 사전 승인도 없이 외부강의를 하는 등 복무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소방서장은

- ① 앞으로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소속 직원이 사전 승인 없이 외부 강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실무(특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소 관 청	안동소방서
관 계 부 서	CCC
내 용	

안동소방서(CCC)에서는 「화재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무(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예방법」 제34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화재예방법」 제5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 업무지침」 4)에는 매년 3월과 9월에 실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4월(3월 특별교육 미이수자)과 10월(9월 특별교육 미이수자)에는 추가 특별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4) 소방청 화재예방과-6888(2018. 10. 4.)

또한, 같은 지침에는 과태료 부과 후 1개월 이내에 여전히 실무교육 미이수 상태라면 같은 해 5월, 11월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한 2023. 3월 실무(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2023. 4. 1. 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같은 해 4월에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3. 3월 실시된 실무(특별)교육 미이수자인 ㉠㉡, ㉢㉣ 에 대하여 약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표] 실무(특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직 능	대상물명	소방안전관리자			과 태 료		비 고 (정당부과)
			이 름	선임일자	교육유효기간	통 지 일	금 액	
1		생략	㉠㉡	2022.-.-.	2022.10.-.	2023.6.16.	500	4월 중
2		생략	㉢㉣	2018.-.-.	2022.12.-.	2023.6.19.	500	4월 중

그 결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소방서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실무(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소방서
관 계 부 서	DDD, CCC
내 용	

안동소방서(DDD, CCC)에서는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화재예방법」 제39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⁵⁾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호 나목. 「화재예방법」 제3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교육(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같은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대통령령(시행 2022. 12. 1.)

없는 경우에는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⁶⁾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방법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직위·소방관련 취득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받거나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시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조직도 등을 참고하여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했고,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선임하여 통보토록 안내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일반직), ㉠㉠㉠(중사), ㉡㉡㉡(상사), ▷▷▷(군무원), ●●㉠(전기안전관리자),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이 감독직위에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내역

- 내용 생략 -

6) 소방청훈령(시행 2022. 12. 1.)

그 결과, 공공기관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였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화재예방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화재예방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호가목.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화재예방법」 제24조 제3항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에는 「화재예방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다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토록 안내했어야 했고, 업무대행 감독자라면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는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를 해주었고,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 ▲▲▲, ◀◀■, ◀■■, ■■■▼, ■▼▼, ▼▼▲, ▼▲▲, ▲▼▲, ▼■▼, ■▼■이 선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화재예방법」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장 105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내역

- 내용 생략 -

그 결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처리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소방서
관 계 부 서	AAA
내 용	

안동소방서 AAA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 일반운영비(201목)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일반수용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등의 급량비로 사용되며,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체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⁷⁾ 등으로 사용하며, 직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시책 사업을 위한 간담회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에서, 물품의 내용연수가 있는 자산취득 성격의 집기비품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세출

7)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또는 시설비(401-01)로 집행하며, 건축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한다.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아닌 시설비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한 시설공사 3건, 소모성 물품 구입 및 기관의 간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야 하는 지출 4건, 총 7건, 45,777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다.

[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

- 내용 생략 -

그 결과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등 예산 질서 및 건전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안동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